「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」 개정 및 연장 사전예고

1. 행정지도 개정 및 연장 필요성
□ (개정 필요성) 전자금융거래법 개정, 이용자 재산보호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자금 보호조치 가입비율의 일원화 등 반영
□ (연장 필요성)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前까지 규제공백을 막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기간 연장
2. 행정지도 대상기관
□ 금융감독원 감독·검사 대상인 전자금융업자 *
*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의거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
3. 행정지도 개정 및 연장 주요 내용
□ 이용자 자금 보호조치 가입비율 일원화 (100%)*
* 간편송금 업무 영위 여부에 관계없이, 이용자 자금 전부에 대해 신탁하거니 지급보증보험 가입
□ 지급보증보험 가입시, 이용자 자금에 대해 안전자산 운용
□ 행정지도 존속기한 만료 (~'22.9.27.)에 따른 기간 연장 (2년)
4. 의견 제출시한 (도착기준)
□ 2022년 8월 30일

붙임1 신·구 대비표

현 행	개정안	비고		
○ (간편송금) 자금을 주려는 이용자(이하 '송금인'이라고 함)가 자금을 받으려는 자(이하 '수취인'이라고 함)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하거나 송금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급하고수취인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는 등 전자자금이체와 실질적으로같은 결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선불업자와 이용자간의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.(생략)	<삭 제>	간편송금 정의 조항 삭제		
<u>가. 공통사항</u> (생략)	<삭 제>	목차 정비		
나. 간편송금을 업으로 하는 경우	<삭 제>	목차 정비		
① (신탁) 선불업자는 선불총전 금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신탁 하여야 한다.(생략)	④ (신탁) (좌동)	목차 정비		
○ 선불충전금 전부에 대해 신탁할 것. 다만, <u>이용자의 간편송금</u>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월말기준 전체 선불충전금(2. 나. ②에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금액은 제외)의 1/10에 해당하는금액(이하 '지급준비금'이라 함)까지는 보통예금 등 <별표1>의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있음(생략)	○ 선불충전금 전부에 대해 신탁할 것. 다만, 전월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(2. ⑤에 따라 지급 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)의 1/10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'지급 준비금'이라 함)까지는 보통예금 등 <별표1>의 안전자산 중 수시 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음(생략)	간편송금 문구 삭제 및 목차 정비		
○ 선불업자가 파산선고, 해산 결의, 등록취소 등 <u>2. 가. ③</u> 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불충 전금을 환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신탁회사는 수익자인 이용자 에게 자금을 우선 지급할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. (생략)	○ 선불업자가 파산선고, 해산 결의, 등록취소 등 2. ③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불충 전금을 환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신탁회사는 수익자인 이용자 에게 자금을 우선 지급할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. (생략)	목차 정비		

(붙임2)「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」개정 전문

※ (붙임1) 신·구 대비표

 현 행	개정안	비고
② (지급보증보험) 선불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총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않고 직접 운용(지급준비금 제외)하고자 하는 경우,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하여 다음 요건을 갖추어 지급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		목차 정비
○ 선불업자가 파산선고, 해산 결의, 등록취소 등 2. 가. ③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불충 전금을 환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증기관이 이용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(생략)	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불충 전금을 환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증기관이 이용자에게	목차 정비
<신 설>	○ 선불업자는 운용대상 선불 충전금에 대해 <별표1> 또는 <별표2>에 따른 안전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	
다. 간편송금을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 ① (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)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% 이상을 ①이용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하거나 ②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의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외에는 (나.) 간편 송금을 업으로 하는 경우와 동일하다.	<삭 제>	간편송금업 영위여부에 따른 구분 삭제

현 행	개정안	비고
○ 선불업자는 선불총전금을 원칙적으로 신탁하되, 불가피한 경우 지급보증방식을 혼합 가능 ○ 선불업자가 선불총전금을 신탁하는 경우 (간편송금을 업 으로 하는 경우와 달리) 대상 금액을 전액 신탁하여야 하며,	<삭 제>	간편송금업 영위여부에 따른 구분 삭제
일부를 지급준비금 용도로 예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② (미신탁·미보험 선불충전금 운용방법) 선불업자는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선불충전금을 운용하는 경우 <별표1> 또는 <별표2>에 따른 안전자산으로 운용하여야한다.		
③ (선불충전금 운용방법 적용례) 선불업자가 신탁 또는 지급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선불충 전금을 운용하는 방식(2. 다. ②)은 동 가이드라인 시행 후 신규로 편입된 선불충전금에 대해 적용 한다.		
○ 다만, 동 가이드라인 시행일 현재 기 운용 중인 자산 중 2. 다. ②를 충족하지 않는 건이 있는 경우		
동 가이드라인 시행 후 6개월 내에 그 중 50% 이상을, 1년 내에 그 나머지를 <별표1> 또는 <별표2>에 따른 안전자산으로 전환하여야 한다.		

<u></u> 현 행	개정안	비고
3. 기타 □ (적용특례) 선불업자가 간편 송금을 업으로 하는 경우라도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자의 선불충전금과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타 서비스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하여 2. 다. 간편 송금을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의 선불충전금 관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.	<u><삭 제></u>	간편송금업 영위여부에 따른 구분 삭제
 < 신 설 > □ (유효기간) 동 가이드라인은 시행일(2020.9.28.)을 기준일로 하여 그로부터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 전까지 적용한다. (생략) 	3. 부 칙<2020.9.28.>	유효기간을 부칙으로 관리
< 신 설 >	4. 부 칙<2022.9.28.> □ (유효기간) 동 가이드라인은 유효기간 연장일(2022.9.28.)을 기준일로 하여 그로부터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 전까지 적용 한다.	유효기간 연장 명시
< 신 설 >	○ 다만, 유효기간 연장일 현재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 하지 않거나 동 가이드라인에 따른 안전자산으로 운용하지 않는 선불충전금이 있는 경우, 유효기간 연장일로부터 3개월 내에 동 가이드라인을 적용하 여야 한다.	개정안 관련 유예기간 마련

붙임2

「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」 개정 전문

1. 총 칙

- □ (목적)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및 관리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수취한 선불충전금에 대한 관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, 건전한 전자금융거래 질서확립을 목적 으로 한다.
- □ (적용대상)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 (이하 '선불업자'라고 함)를 대상으로 한다.
- □ (정의)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**(선불충전금)**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, 양도,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.

2. 선불충전금 관리

- ① **(분리 관리)**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- ② (자금 기록·관리) 선불업자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일치 여부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점검결과 불일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24시간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선불충전금의 규모, 신탁내역,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및 부보금액 등 고객자금 운영 현황은 매 분기말(분기 종료 후 10일이내)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.
- ③ (선불충전금 지급) 선불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지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·지급장소,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 - 1.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
 - 2.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

- 3.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- 4.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-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4 (신탁)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신탁하여야 한다.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인가를 받은 은행 등 신탁 업자에게 신탁할 것
- 선불충전금 전부에 대해 신탁할 것. 다만, 전월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(2. ⑤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)의 1/10에 해당하는 금액 (이하 '지급준비금'이라 함)까지는 보통예금 등 <별표1>의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음
- 신탁된 선불충전금(지급준비금 제외)의 수익자를 이용자로 지정할 것. 다만, 개별 이용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선불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(SPC)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음
- 선불업자는 신탁업자에게 <별표1>에 따른 안전자산으로 유용하도록 지시할 것
- ㅇ 당일 이용자 및 자금의 변동내역은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 처리할 것
- 선불업자가 파산선고, 해산결의, 등록취소 등 2. ③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불충전금을 환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신탁회사는 수익자인 이용자에게 자금을 우선 지급할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. 다만, 수익자가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특수목적법인이 선불업자에게 이용자 명단 및 지급 금액 정보를 받아 개별 이용자에게 지급할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
- [5] (지급보증보험) 선불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않고 직접 운용(지급준비금 제외)하고자 하는 경우, 운용대상 금액전부에 대하여 다음 요건을 갖추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- 선불업자가 파산선고, 해산결의, 등록취소 등 2. ③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 하여 선불충전금을 환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증기관이 이용자에게 보상 하는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
- 보험계약의 금액은 직접 운용하고자 하는 선불충전금 총액으로 하고, 운용 대상 금액은 보험계약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

- 피보험자는 이용자로 할 것(계약당시에는 피보험자를 선불업자의 이용자 라고만 정하고,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회사가 선불업자에게 구체적인 이용자 명단 및 지급 금액 정보를 받아 개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가능)
- 선불업자는 운용대상 선불충전금에 대해 <별표1> 또는 <별표2>에 따른 안전자산 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3. 부 칙<2020.9.28.>

- □ (유효기간) 동 가이드라인은 시행일(2020.9.28.)을 기준일로 하여 그로부터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 전까지 적용한다.
- 다만, 시행일 현재 영업 중인 선불업자에 한하여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 시행 후 3개월간 적용을 유예한다.

4. 부 칙<2022.9.28.>

- □ **(유효기간)** 동 가이드라인은 유효기간 연장일(2022.9.28.)을 기준일로 하여 그로부터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 전까지 적용한다.
- 다만, 유효기간 연장일 현재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
 동 가이드라인에 따른 안전자산으로 운용하지 않는 선불충전금이 있는 경우,
 유효기간 연장일로부터 3개월 내에 동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한다.

<별표1> 안전자산의 종류(1종)

- 1. 국채, 지방채
- 2.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금융회사(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1호의 부보금융회사)가 지급보증한 채무증권
- 3. 우체국 예치
- 4. 은행의 예금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
- 5. 은행이 발행한 채권 중 후순위채권 및 주식관련채권 이외의 채권
- 6.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한 주택저당증권
- 7.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)
- 8. 환매조건부 채권(다만, 대상증권은 국채, 지방채 등 안전자산(1종)에 속한 채권에 한함)
- 9. 당해 신탁업자에 대한 대출채권(다만,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)

< B표2 > 안전지산의 종류(2종) ·

- 1. 복수의 기업신용평가기관에 의해 AAA등급으로 분류된 회사채(다만, 집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 운용금액 중 ^①동일 법인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서는 100분의 5를, ^②동일 계열기업군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)에 속하는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을 초과 하여 투자할 수 없음)
- 2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제229조제5호)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(MMF)